



유의사항

- 1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2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신청인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2. ②신청내용란의 신청사유란은 해당하는 신청사유에 “√”로 표시를 하고,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확인받기로 정한 지정일, 구직활동(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) 이행기간, 구직활동 이행내용을 적고, 신청 회차 및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신청금액 등을 모두 적습니다.
- 3. ③수당수급계좌번호란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적습니다.
- 4. ④소득발생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.
- 5. ⑤취업(예정)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형태(근로자 취업, 자영업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)와 관계없이 취업(예정)한 사실이 있으면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